

티웨이항공  
국제여객운송약관

개정판 「2018.01.22.」 발행

## 개정 기록표

개정 번호	개정 일자	주요 개정 내용	개정 부서
0	01OCT2011	최초	영업지원팀
1	18MAY2015	제 3조 2항 나 (항공권의 유효기간)	영업지원팀
1	18MAY2015	제 7조 6항 가 (국제선 수하물 규정)	영업지원팀
2	05JUN2015	제15조 3항 사 (운송인의 책임범위)	영업지원팀
3	17DEC2015	제9조 5항 나 (위험물, 파손되기 쉬운 물품 또는 부적당한 수하물)	예약판매팀
3	17DEC2015	제13조 2항 (기내식)	예약판매팀
4	10MAY2016	제 5조 5항 (세금)	영업지원팀
5	18JUL2016	제 1조 (정의)	영업지원팀
5	18JUL2016	제 15조 1항 (연결운송인)	영업지원팀
5	18JUL2016	제 15조 3항 (책임의 범위)	영업지원팀
<b>6</b>	<b>22JAN2018</b>	<b>전체 약관 개정 (국토교통부 약관 정비)</b>	<b>영업기획팀</b>

## 유효 페이지 목록

페이지	개정번호	개정 일자
개정 기록표	6	22-Jan-18
유효페이지목록	6	22-Jan-18
목차	6	22-Jan-18
<b>제 1 조</b>		
<b>정의</b>		
1-1~36	6	22-Jan-18
<b>제 2 조</b>		
<b>약관의 적용</b>		
2-1	0	01-Oct-11
2-2	0	01-Oct-11
2-3	0	01-Oct-11
2-4	0	01-Oct-11
2-5	0	01-Oct-11
2-6	6	22-Jan-18
2-7	6	22-Jan-18
<b>제 3 조</b>		
<b>항공권</b>		
3-1	0	01-Oct-11
3-2	6	22-Jan-18
3-3	0	01-Oct-11
3-4	6	22-Jan-18
3-5	0	01-Oct-11
3-6	0	01-Oct-11
3-7	0	01-Oct-11
<b>제 4 조</b>		
<b>운임, 요금 및 경로</b>		
4-1	6	22-Jan-18
4-2	6	22-Jan-18
4-3	6	22-Jan-18
4-4	6	22-Jan-18

페이지	개정번호	개정 일자
<b>제 5 조</b>		
<b>경로변경, 운송불이행 및 접속불능</b>		
5-1	0	01-Oct-11
5-2	0	01-Oct-11
<b>제 6 조</b>		
<b>예약</b>		
6-1	0	01-Oct-11
6-2	6	22-Jan-18
6-3	0	01-Oct-11
6-4	6	22-Jan-18
6-5	6	22-Jan-18
6-6	0	01-Oct-11
<b>제 7 조</b>		
<b>운송의 제한</b>		
7-1	0	01-Oct-11
7-2	6	22-Jan-18
7-3	0	01-Oct-11
7-4	0	01-Oct-11
7-5	0	01-Oct-11
<b>제 8 조</b>		
<b>수하물</b>		
8-1	6	22-Jan-18
8-2	0	01-Oct-11
8-3	0	01-Oct-11
8-4	6	22-Jan-18
8-5	6	22-Jan-18
8-6	6	22-Jan-18
8-7	0	01-Oct-11
8-8	0	01-Oct-11
8-9	6	22-Jan-18

페이지	개정번호	개정 일자
8-10	0	01-Oct-11
8-11	0	01-Oct-11
8-12	0	01-Oct-11
8-13	0	01-Oct-11
<b>제 9 조</b> <b>항공편 스케줄 지연 및 취소</b>		
9-1	0	01-Oct-11
9-2	0	01-Oct-11
<b>제 10 조</b> <b>환불</b>		
10-1	0	01-Oct-11
10-2	0	01-Oct-11
10-3	0	01-Oct-11
10-4	0	01-Oct-11
10-5	0	01-Oct-11
10-6	0	01-Oct-11
<b>제 11 조</b> <b>지상운송 서비스</b>		
11-1	0	01-Oct-11
<b>제 12 조</b> <b>출입국 수속</b>		
12-1	0	01-Oct-11
12-2	0	01-Oct-11
12-3	0	01-Oct-11
12-4	0	01-Oct-11
<b>제 13 조</b> <b>여객의 협조의무</b>		
13-1	6	22-Jan-18
13-2	6	22-Jan-18
13-3	6	22-Jan-18

페이지	개정번호	개정 일자
13-4	6	22-Jan-18
13-5	6	22-Jan-18
13-6	6	22-Jan-18
<b>제 14 조</b> <b>운송인의 책임</b>		
14-1	5	18-Jul-16
14-2	0	01-Oct-11
14-3	6	22-Jan-18
14-4	0	01-Oct-11
<b>제 15 조</b> <b>손해배상 청구기한 및 제소기한</b>		
15-1	6	22-Jan-18
15-2	0	01-Oct-11
<b>제 16 조</b> <b>법령 우선</b>		
16-1	0	01-Oct-11
<b>제 17 조</b> <b>수정 및 포기</b>		
16-2	0	01-Oct-11
<b>제 18 조</b> <b>약관의 정본</b>		
16-3	0	01-Oct-11
Approved by C.E.O		
		

## 목차

### 제 1 조 (정의)

### 제 2 조 (약관의 적용)

1. 총칙
2. 적용
3. 무상운송
4. 전세운송 계약
5. 효력
- 6. 변경**
7. 공동편 운항 (개정 2013.04.08)

### 제 3 조 (항공권)

1. 총칙
2. 항공권의 유효성
3. 항공권의 유효기간 연장
- 4. 탑승용 쿠폰의 사용 순서**
5. 항공권의 불지참, 분실 또는 이례
6. 비양도성
7. 양도성

### 제 4 조 (운임, 요금 및 경로)

- 1. 적용운임 및 요금**
- 2. 경로**
- 3. 운임 및 요금의 지불**
- 4. 세금, 이용료 및 요금 등**

## 제 5 조 (경로변경, 운송 불이행 및 접속불능)

1. 여객 요청에 따른 경로 변경
2. 티웨이항공 사정에 의한 경로 변경

## 제 6 조 (예약)

1. 총칙
2. 예약의 조건
3. 통신비
4. 여객의 공항도착
5. 예약의 취소
6. 개인정보

## 제 7 조 (운송의 제한)

## 제 8 조 (수하물)

1. 위탁 수하물
2. 수하물의 운송
3. 수하물의 내용조사
4. 수하물의 인도
5. 수하물로서 운송이 제한되는 물품
6.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
7. 무료 기내 휴대품
8. 기내 동물
9. 초과 수하물 요금 (개정 2013.07.15)

10. 종가요금
11. 경로변경 또는 취소시의 초과수하물 요금 및 종가 요금
12. 수하물 요금의 지불
13. 티웨이항공에 의한 수하물의 인수

## **제 9 조 (항공편 스케줄 지연 및 취소)**

1. 스케줄
2. 취소

## **제 10 조 (환불)**

1. 총칙
2. 통화
3. 환불절차
4. 티웨이항공 사정에 의한 환불
5. 여객 사정에 의한 환불
6. 분실 항공권

## **제 11 조 (지상운송 서비스)**

## **제 12 조 (출입국 수속)**

1. 법령의 준수
2. 여권 및 사증
3. 세관검사
4. 정부의 규정

## 제 13 조 (여객의 협조의무)

## 제 14 조 (운송인의 책임)

1. 연결운송인
2. 적용 법규
3. 책임의 범위
4. 제소 원인

## 제 15 조 (손해배상 청구기한 및 제소기한)

1. 손해배상 청구기한
2. 제소기한

## 제 16 조 (법령 우선)

## 제 17 조 (수정 및 포기)

## 제 18 조 (약관의 정보)



## 제 1 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하물 ”이란 여객이 자신의 여행과 관련하여 착용 또는 사용하거나 안락 또는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적절한 여객의 물품, 용품 및 기타 휴대품을 의미하며,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위탁 수하물 및 휴대 수하물을 공히 포함한다. 단, 동일한 품목을 다량 운송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목적으로 간주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하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수하물표 ”란 전적으로 위탁 수하물의 식별만을 위하여 운송인에 의하여 발행된 증표로서 위탁 수하물에 부착하는 수하물 확인표와 여객에게 인도되는 수하물 청구표로 구성된다.
3. “운송”이란 수송과 동의어로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행하는 여객 또는 수하물의 항공운송을 말한다.
4. “운송인”이란 항공 운송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항공권을 발행하는 항공 운송인과, 동 항공권에 의거하여 여객 또는 그 수하물을 운송하거나 당해 항공운송에 관련되는 기타 서비스를 이행하거나 이행할 것을 위임 받은 항공 운송인을 포함한다.
5. “위탁 수하물”이란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이 보관하는 수하물이며 운송인이 수하물표를 발행한 수하물을 말한다.
6. “성인”이란 만 13 세 이상의 여객을 말한다.
7. “소아”란 만 2 세 이상 만 12 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8. “유아”란 만 2 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9. “간접손해”란 휴대품의 파손, 분실 또는 지연 등의 결과로 초래되어 여객이 자비부담으로 처리한 손해 및 기타 입증 가능한 손해를 말한다.
10. “주회여행”이란, 한 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계속적으로 주회하는 항공로를 이용하여 동 출발지점에 돌아오는 여행을 말한다.
11. “연결 항공권”이란 한 여객에게 동시에 발행되는 2 매 이상의 항공권으로서, 단일 운송계약을 형성한다.
12. “협약”이란 1929 년 10 월 12 일 바르샤바에서 조인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바르샤바협약”이라 칭함) 또는 1955 년 9 월 28 일 헤이그에서 개정된 협약(이하 “개정바르샤바협약”이라 칭함) 또는 1999 년 5 월 28 일 몬트리올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몬트리올 협약”이라 칭함)으로서 그 중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13. “日”이란 일요일과 법적 공휴일을 포함한 총 일력 일수를 말한다. 단, 통지를 할 경우에 당해 통지 일은 일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유효기간의 산정을 위한 경우에는 항공권 발행일 또는 여행 개시일은 계산치 아니한다.
14. “손해”란 항공운송이나 그에 부수하여 운송인이 행하는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사망, 상해, 지연, 분실 또는 기타 여하한 성질의 손해도 포함한다.
15. “목적지”란 운송계약에 따른 최종 도착지를 말한다. 왕복 또는 주회 여행 시의 목적지는 출발지와 동일지점이 된다.
16. “탑승용 쿠폰”이란 여객 항공권의 일부분으로서 운송이 유효하게 이행될 특정구간을 명시한 쿠폰을 말한다.

17. “협약에 정의된 이외의 국제운송”이란 바르샤바협약 또는 개정바르샤바협약 또는 몬트리올협약에서 정의된 국제운송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 운송으로서, 운송 계약에 따라 출발지와 착륙지가 둘 이상의 국가에 위치하는 운송을 말한다. 여기서 "국가"란 한나라의 주권, 종주권, 위임통치, 권력 또는 신탁통치 하에 있는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18. “티웨이항공”이란 주식회사 티웨이항공을 말한다.
19. “제비용 청구서 (MISCELLANEOUS CHARGES ORDER : 이하 “MCO ”라 한다)”란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서 발행되는 증표로서 동 증표에 기재된 사람에게 여객항공권의 발행 또는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하는 증표를 말한다.
20. “오픈-쇼 여행”이란 근본적으로 왕복여행의 성격을 가진 여행이지만, 1 국내의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이 상이하거나 타국내의 도착지점과 출발지점이 상이한 여행 또는 4개 지점이 모두 상이한 경우의 여행을 말한다.
21. “여객”이란 승무원을 제외하고, 운송인의 동의 하에 항공기로 운송되거나, 운송될 사람을 말한다.
22. “여객용 쿠폰”이란 여객 항공권의 일부분으로 여객과의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증거서류를 말한다.
23. “여객항공권”이란 여객운송을 위하여 운송인에 의하여 발행되는 항공권의 일부분을 말한다.
24. “왕복여행”이란 왕편 및 복편 운임의 동일여부를 불문하고 한 지점으로부터 타 지점으로 여행하고 왕편과 동일한 항공로를 통하여 출발지점에 복귀하는 여행, 또는 한 지점으로부터 타 지점에 여행하되 왕편과 상이한 항공로로 출발지점에 복귀하되 왕편 및 복편에 동일한 통상직행 편도운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여행을 말한다.
25. "일반 운임" 이란 국제선 구간의 항공운송을 위하여 항공사가 정한 비할인 정규 여객운임을 말한다.
26. "스마트 운임" 이란 항공사가 일반운임을 기준으로 예매시점에 따라 적용운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하는 특별운임을 말한다.
27. "이벤트 운임" 이란 특별히 정해진 기간에 한하여 항공사가 정하는 별도의 판매조건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특별운임을 말한다.
28. “도중체류”란 여행의 중단과 동의어로서 운송인의 사전 합의하에 출발지와 목적지간의 지점에서 의도적으로 여객이 여행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29. “태리프”란 티웨이항공이 여객 및 수하물의 국제운송에 적용하는 운임, 요율 및 요금과 동 운송에 관련된 규정 및 절차를 말하며 이는 본 운송약관의 일부를 구성한다.
30. “항공권”이란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에 의하여 발행되는 전자항공권(ELECTRONIC TICKET)을 의미한다.
  - 가. “전자항공권”이란 항공사에 의해 또는 항공사를 대신해서 발행된 E-Ticket 여정/영수표(ITINERARY/RECEIPT), 전자 쿠폰을 말한다.
  - 나. “전자 쿠폰”이란 전자 탑승용 쿠폰 또는 항공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관련 자료를 말한다.
  - 다. “여정/영수표(ITINERARY/RECEIPT)”란 항공사가 전자항공권으로 여행하는 승객에게 발행하는 승객성명, 항공편, 고지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 라. “유효인의 날인 한다.” 함은 여객 항공권이 운송인에 의하여 공식 발행되었음을 표시하는 항공권상에의 날인을 말한다.

- 31. “휴대 수하물”이란 위탁 수하물 이외의 수하물을 말한다.
- 32. **"초과 수하물" 이란 항공사가 정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한 수하물을 말한다.**
- 33. “선불항공권 통지(PREPAID TICKET ADVICE)”란 어떤 지역 거주자가 선불한 항공권을 타 지역 거주자에게 발행해 줄 것을 이메일 또는 FAX 를 통하여, 항공사는 적용 테라프에 의거 서비스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 34. “미합중국 ”이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50 개 연방주, 콜롬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버진군도, 아메리칸 사모아, 베이커섬, 괌, 하울랜드섬, 자비스섬, 미드웨이섬, 북마리아나제도, 팔미라섬, 사이판, 스웨인섬, 웨이크섬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을 말한다.
- 35. “불가항력”이란 여객이 통제할 수 없는 특별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모든 주의를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당해 결과를 피할 수 없었거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36. **“탑승수속 마감시간" 이란 여객이 탑승권 수령과 수하물 위탁을 완료하여야 하는, 항공사에 의해 정하여진 시간을 말한다.**

## 제 2 조 (약관의 적용)

### 1. 총칙

본 운송약관과 기타 적용 태리프의 어떠한 것도 협약의 여하한 규정을 수정하거나 포기토록 하지 않는다.

### 2. 적용

본 운송약관은,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또한 전적으로 티웨이항공의 국내운송약관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운송약관과 관련하여 공시된 운임, 요율 및 요금으로 티웨이항공에 의하여 수행되는 여객과 수하물의 운송 및 이에 부수하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된다.

### 3. 무상운송

무상운송에 관하여는 티웨이항공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약관에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할 권리를 보유한다.

### 4. 전세운송 계약

티웨이항공과의 전세운송 계약에 의거 행하는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에 대하여는 당해 전세운송 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전세운송계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운송약관을 적용한다. 여객은, 전세운송계약에 의한 운송을 수락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티웨이항공과의 전세운송계약 당사자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전세운송 계약 및 본 운송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5. 효력

모든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은 항공권의 최초 탑승용 쿠폰에 의하여 행하여진 여행개시당일에 유효한 운송약관과 기타 적용태리프에 의거한다.

### 6. 변경

**티웨이항공의 운송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법령 개정이나 정부 지침, 서비스 개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 그 외의 사유로 운송약관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시행 전 발권한 승객에게는 변경된 운송약관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 7. 공동편 운항 (개정 2013.04.08)

가. 티웨이항공은 타 항공사와의 공동운항 협정에 따라 타 항공사가 운항하는 구간에 대해 티웨이항공의 상호 또는 항공사 코드로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다.

**나. 공동운항 협정에 의해 티웨이항공이 운항하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에 대하여는 본 운송약관이 적용된다.**

다. 단,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 본 운송약관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티웨이항공은 해당 내용을 여객에게 고지한다.

- 1) 탑승수속 마감시간 및 절차
- 2)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객의 처리
- 3) 유아 항공요금
- 4) 무료 수하물 허용량 및 초과 수하물 요금
- 5) 특수 수하물
- 6) 기타 항공기 탑승 및 수하물 관련 내용

### 제 3 조 (항공권)

#### 1. 총칙

여객이 적용운임을 지불하지 않거나, 티웨이항공의 신용거래 조건에 따르지 않는 한, 티웨이항공은 항공권을 발행치 아니하며 여하한 경우에도 운송을 행하지 아니한다.

#### 2. 항공권의 유효성

가. 항공권은 유효인이 날인되었을 때에 항공권에 기재된 경로를 거쳐 출발지 공항으로부터 도착지 공항까지의 운송과 적용 등급에 대한 운송을 위하여 효력을 가지며 하기 “나”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유효하다. 각 탑승용 쿠폰은 좌석예약이 된 항공편에 유효하며 좌석예약이 되지 아니한 상태로 발행된 경우에는 예약 신청 시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약할 수 있다. 발행 장소 및 발행일은 여정/영수표에 표시된다.

**나.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전체 미사용 항공권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1 년이고 여행 개시 후에는 최초 출발일로부터 1 년이다. 상기 유효기간 미만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운임에 따라 발행된 항공권 또는 그러한 운임을 포함하는 항공권의 경우 당해 단기유효기간은 당해 운임이 적용되는 운송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MCO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 년간이다. MCO는 발행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시하지 아니하면 항공권과 교환될 수 없다.

라. 항공권은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일의 24 시에 실효하다. 적용약관 규정에 별도로 규정하여 있지 아니하는 한, 항공권의 최종 탑승용 쿠폰에 의한 최종구간의 여행은 유효기간 만료일의 24 시 이전에 개시되어야 하며 이 경우는 만료일을 경과하여 여행을 계속할 수 있다.

마. 유효기간이 만료된 항공권, 또는 MCO는 제 11 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된다.

바. 탑승용 쿠폰상의 예약등급(Booking Class)과 해당 승객의 예약기록(Passenger Name Record : PNR)상의 예약 등급은 일치하여야 한다. 상기 예약등급이 상이한 경우, 해당 승객의 탑승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정해진 차액을 징수 시에 한해 탑승이 허용될 수 있다.

#### 3. 항공권의 유효기간 연장

가. 상기 3 조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운임 추징 없이 다음과 같이 연장될 수 있다.

1) 아래의 경우 당해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30일까지

가) 티웨이항공이 당해 유효 기간 중에 여객의 좌석이 확보되어 있는 항공편을 취소 또는 지연한 경우

나) 티웨이항공이 여객의 출발지, 목적지 또는 도중체류지로서 지정된 지점에 기항지 아니한 경우

다) 티웨이항공이 운항시간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항하지 못한 경우

라) 티웨이항공 사정에 의하여 여객이 타 항공편에 접속되지 못한 경우

마) 티웨이항공이 객실 등급을 변경한 경우

바) 티웨이항공이 사전에 좌석 등급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2) 유효기간이 1년인 항공권을 소지한 여객이 예약을 요청할 시 좌석예약이 불가능할 경우, 당해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7일까지

#### 나. 질병으로 인한 여행중단

적용 태리프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여객이 여행 개시 후 임신을 제외한 발병으로 항공권의 유효 기간 내에 여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 티웨이항공은 건강진단서에 따라 여행이 가능하게 되는 날까지 또는 그러한 날로부터 운임이 지불된 등급에 탑승이 가능하며, 여행이 재개되는 지정 또는 최종 접속지점을 출발하는 첫 항공편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단, 유효기간이 1년인 항공권의 잔여 탑승용 쿠폰이 1개 지정 이상의 도중체류지를 포함할 경우에, 당해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당해 건강진단서상에 표시된 여행가능 일자로부터 3개월간 연장될 수 있다. 이 경우 티웨이항공은 환자를 실제로 동반하는 자의 항공권 유효기간도 동일하게 연장한다.

다. 여객이 여행 중에 사망한 경우에 당해 여객의 동반 직계가족 또는 기타 동반자의 항공권 유효기간은 사망일로부터 45 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라. 최단 체류요건이 포함되어 있는 특별운임으로 판매된 항공권의 경우,

1) 여행 중 사망한 여객의 직계가족에 대한 또는

2) 여행 중 사망한 여객의 기타 실제 동반자에 대한 최단 체류요건은 당해 사망 증명서 또는 동사본의 제출시 유보된다.

마. 최단 체류요건의 적용을 받는 특별운임 항공권 소지 여객이 자신이 동반하지 않는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하여 최단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복편여행을 개시하고자 하나 당해 사망증명서 또는 동 사본을 즉각 제시하지 못할 경우, 당해 여객은 자신의 여행 중에 당해 가족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사망증명서를 추후 제출할 시 최단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여행을 하기 위하여 지불한 추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주) 당해여객을 동반하는 직계가족에게도 동일 규정이 적용된다.

## 4. 탑승용 쿠폰의 사용 순서

**가. 항공권은 출발지로부터 항공권상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사용되어야한다.**

**나. 항공권상에 명시된 순서대로 사용하지않은 경우, 항공권은 운송을 위해 접수될 수 없으며 환불 처리된다.**

## 5. 항공권의 불 지참, 분실 또는 이례

티웨이항공은 유효한 항공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여객의 운송을 거절한다. 항공권 또는 동 권의 유효한 탑승용 쿠폰의 분실 또는 불 제시의 경우, 여행 당일의 유효한 운임으로 별도의 항공권을 구입하지 않는 한 당해 항공권 또는 동 권의 탑승용 쿠폰상의 구간에 대한 운송은 제공되지 아니한다.

항공권의 일부분이 손상된 경우, 운송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변조되었거나 삭제된 항공권의 경우 또는 여객용 쿠폰 및 모든 미사용 탑승용 쿠폰과 함께 제시하지 아니하는 항공권의 경우에는 티웨이항공은 그러한 항공권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분실사실에 대해 만족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고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티웨이항공은 여객 요청에 따라 신규항공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경우 당해 대체항공권의 발행에 따라 티웨이항공이 입을지도 모르는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는 티웨이항공이 정한 형식에 의거, 여객이 티웨이항공을 면책할 것을 동의하는 조건으로 신규항공권을 발행한다.

## 6. 비 양도성

항공권은 양도하지 못한다. 운송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자 또는 환불 받을 권리가 있는 자 이외의 자에 의해 항공권이 제시된 경우, 티웨이항공이 그러한 항공권에 의해 운송을 제공했거나 환불한 것에 대해서, 운송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자 또는 당해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티웨이항공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항공권이 피발행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사용된 경우에는 피발행자의 인지 또는 동의 여부를 불문코 티웨이항공은 이러한 부당 사용으로부터 기인하는 부당 사용자의 사망, 상해 또는 그의 수하물 또는 기타 휴대품의 분실, 파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7. 양도성

회사가 특별히 발행하는 행사용 항공권의 경우 항공권상 명시되었다면 사용자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된 사용자 외 항공권 사용은 불가하다.



## 제 4 조 (운임, 요금 및 경로)

### 1. 적용운임 및 요금

- 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운송약관 및 적용 태리프에 의거한 운송에 적용할 운임 및 요금은, 티웨이항공에 의하여 정당하게 공시되고 항공권상에 명시된 특정 날짜 및 여정으로 여행하기 위해 항공사에 지불한 당일에 유효한 것으로 한다. 수수한 운임 및 요금이 상기 적용운임 또는 요금과 상이할 경우 그 차액을 추징 또는 환불한다. 여객의 요청으로 여정 변경 시, 여정 변경일에 유효한 운임 및 요금에 따라 재계산한다.
- 나. 공시운임은 출발지 공항으로부터 도착지 공항까지의 운송에만 적용되며 공항 지역 내 또는 공항간이나, 공항으로부터 시내까지의 지상운송에 대하여는 별도 요금을 추징한다. 단, 적용 태리프에 당해 지상운송을 요금의 추징 없이 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다. 적용태리프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적용 태리프에 공시된 직행운임은, 동일 지점간의 동일등급에 적용되는 구간운임을 합산한 운임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라. 적용태리프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적용태리프에 공시된 운임은 동 운임이 적용되는 등급의 좌석 1 개를 여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단, 여객이 체격 관계로 1 개 이상의 좌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1 개의 추가 좌석을 운임의 추징 없이 제공할 수 있다. 만일 사전에 2 개의 좌석을 예약하는 경우에는 적용운임의 2 배액을 징수한다.

### 2. 경로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운임은 양방향에 적용되어 운임과 관련하여 공시된 경로에 한하여 적용된다. 동일 운임으로 여행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경로가 있을 경우 항공권 발행 전에 여객이 경로를 지정할 수 있으며, 당해 항공권에 예약이 되어 있지 않는 구간에 대하여는 희망하는 경로를 지정할 수가 있다. 경로가 특별히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티웨이항공이 그 경로를 결정할 수가 있다.

### 3. 운임 및 요금의 지불

운임 및 요금의 지불은 외환관계법 및 정부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고, 티웨이항공이 수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임 및 요금이 공시된 통화 이외의 타 통화 수단으로 할 수가 있다.

- 가. 적용태리프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공시운임 또는 요금을 판매통화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티웨이항공이 설정한 환율을 사용한다.

- 1) 해당국가 중앙은행 환율
- 2) SDR

#### 나. 원화 이외의 통화로 지불될 경우

법령 또는 정부가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발권 또는 요금 징수를 위하여 공시운임 또는 요금을 외화로 환산할 경우에 티웨이항공이 적용하는 환율은 은행 대고객 매입율이며, 매주 월요일의 최종 환율을 당주 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주간단위로 사용한다.

- 1)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주 금요일의 환율을 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까지 사용한다.
  - 2) 외화로 지불된 항공권 또는 요금의 국내 환불 시에는 환불 접수일에 유효한 은행 대고객 매입율을 사용한다.
  - 3) 재발권으로 인하여 요금을 추징하여야 할 경우 추징요금에 대해서만 재발권일에 유효한 은행 대고객 매입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후 추징한다.
- 다. 유효한 은행 대고객 매도율 또는 매입율이라 함은 익일 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사용할 당주 월요일의 은행 대고객 매도율 또는 매입율을 말한다.
- 라. 상기“다”호에도 불구하고 환율의 변동 폭이 전일비교 1%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동된 신한율을 익일부터 당해 1 주일간의 잔여기간 동안 사용한다.

#### 4. 세금, 이용료 및 요금 등

정부 당국, 공항 운영자 및 항공사가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 서비스 수수료, 기타 발생하는 요금 등은 항공사가 정한 운임 및 요금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 제 5 조 (경로변경, 운송 불이행 및 접속불능)

### 1. 여객 요청에 따른 경로 변경

가. 티웨이항공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요청에 따라 미사용 항공권, 탑승용 쿠폰 또는 MCO 에 기재된 경로(출발지 제외), 운송인, 목적지, 운임 또는 유효기간 등의 변경을 새로운 항공권을 발행하거나 이서함으로써 변경한다.

1) 티웨이항공이 당해 항공권, 또는 MCO를 최초로 발행한 경우

2) 경로변경이 시작되는 최초 구간의 운송을 위하여 미사용 탑승용 쿠폰 또는 MCO의 “운송인”란에 티웨이항공이 최초 운송인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최초 운송인이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단, 이 경우 당해 항공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변경되는 구간 중 일부 구간의 운송인으로 지정되어 있고 여객이 변경을 요청한 지점에 그 운송인의 영업소 또는 그로부터 이서권을 위임받은 총대리점이 있는 경우에는 티웨이항공은 당해 발행 운송인으로부터 이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3) 티웨이항공이 당해 변경을 행할 권리를 가진 운송인으로부터 문서 또는 전보로 그러한 변경을 승인 받은 경우

나. 경로변경의 결과로 적용 운임 및 요금이 변경될 경우, 당해 신운임 및 요금은 적용테리프에 정한 바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다. 선불항공권 통지에 의하여 발행된 항공권 또는 MCO 의 경우, 이서의 권한은 항공권 또는 MCO 를 발행하는 운송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당해 선불 항공권 통지를 발행한 운송인에 있다.

라. 경로변경에 의해서 발행된 신규항공권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최초 항공권 또는 MCO 에 적용되던 유효기간이 계속 적용된다.

### 2. 티웨이항공 사정에 의한 경로 변경

가. 티웨이항공이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운항시간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항공편을 운항하지 못하거나, 여객의 항공권상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지 또는 도중 체류지에 기착하지 못하거나, 사전에 예약된 좌석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또는 제 8 조 1 항의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이 운송을 거절당한 경우, 티웨이항공은 다음 조치 중 하나를 취한다.

1) 좌석 제공이 가능한 티웨이항공의 타 항공편으로 운송하거나,

2) 여객을 경로 변경하여 항공권 또는 유효한 쿠폰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지 또는 도중 체류지까지 티웨이항공의 운송수단 또는 타 운송기관에 의하여 운송하거나

3) 제11조 4항에 정한 바에 따라 환불한다.

나.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인이 운항시간표대로 운항하지 못했거나 또는 당해 항공편의 운항시간을 변경했기 때문에 여객이 좌석예약이 되어 있는 티웨이항공의 접속 항공편에 탑승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동 여객을 운송한 운송인이 여객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티웨이항공은 당해 접속불능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티웨이항공 사정에 의하여 경로변경을 한 여객에게는 당해 여객이 최초운임을 지불한 등급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그대로 적용한다. 본 규정은 여객이 일등으로부터 이등으로 변경함에 따라 운임의 환불을 받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 제 6 조 (예 약)

### 1.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용 쿠폰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2. 예약의 조건

가. 특정 항공편에 대한 좌석의 예약은 당해 좌석의 예약이 티웨이항공의 예약요원에 의해 확인되어, 해당 예약된 좌석의 기록이 티웨이항공의 예약 시스템 내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에 유효 한다. 여객이 티웨이항공이 정하는 시간까지 예약된 좌석에 대하여 항공권을 구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티웨이항공은 사전 통고 없이 당해 예약을 취소한다.

**나. 항공편에 대한 좌석 예약이 항공기내 특정 좌석에 대한 지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 3. 통신비

예약에 관한 여객의 특별요청에 따라 티웨이항공이 지불했거나, 청구 받은 전화, 전보, 무선전신 등의 통신비는 당해 여객이 부담한다.

### 4. 여객의 공항도착

여객은 티웨이항공이 지정한 시각까지, 출국수속 및 탑승수속을 완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여유를 두고 공항 또는 기타 출발지점에 도착하여야 한다. 여객이 지정된 시각까지 당해 공항 또는 기타 출발지점에 도착치 못하거나 서류 불비로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티웨이항공은 예약된 좌석을 취소할 수 있다. 항공편의 예정 출발시각 이전에 제반 수속을 완료할 수 없는 정도로 공항 또는 기타 출발지점에 늦게 도착한 여객을 위하여 출발시각을 지연시킬 수 없으며, 여객이 본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므로써 발생하는 손해나 비용에 대하여 티웨이항공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객은 좌석배정 시 지정한 시간까지 탑승구에 도착하여야 한다.

가. 여객이 정해진 시간까지 탑승구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지정된 좌석을 취소할 수 있다.

나. 책임

동 조항의 규정 미 준수에 따라 발생한 여객의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 5. 예약의 취소

여객이 예약한 좌석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티웨이항공은 당해 여객의 계속편 또는 복편예약 등 모든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가. 여객이 정해진 시간까지 탑승구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지정된 좌석을 취소할 수 있다.

나. 여객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예약한 좌석을 취소하는 경우, 항공사가 별도로 규정한 취소수수료를 징수한다.

다. 예약된 항공편의 탑승수속이 마감된 이후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취소수수료 외 예약부도 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한다.

## 6. 개인 정보

여객 또는 여객의 대리인은 예약, 항공권 구입, 기타 서비스, 출입국 심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티웨이항공 또는 정부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여객의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와 같은 목적으로 티웨이항공에 제공된 여객의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티웨이항공 지점 및 대리점, 정부기관, 타 항공사, 제휴사, 또는 상기 언급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제공될 수 있다.

## 제 7 조 (운송의 제한)

1. 티웨이항공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거, 다음 경우에는 여객의 운송을 거절하거나, 예약을 취소하거나 도중에서 여객을 하기 조치할 수 있다.

가. 당해 조치가 안전상 필요한 경우

나. 당해 조치가 출발지국, 도착지국 또는 경유지국의 적용법령, 규정 또는 명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다. 여객의 행동, 연령 또는 정신적, 육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1) 티웨이항공의 특별취급이 필요한 경우

2) 타 여객에 불안을 초래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자신, 타 여객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유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라. 티웨이항공의 요구를 받고도 자신의 신분을 명백히 밝히기를 거절하는 경우

마. 폭발물, 무기류, 기타 위험물품 소지나 은닉여부를 조사키 위한 신체 또는 소유물의 검색을 거절하는 경우

바. 타 여객의 편안하고 안전한 항공여행을 훼손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여객, 또는 티웨이항공 직원에게 유, 무형의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거래 상의 심히 부당한 요구를 반복하여 티웨이항공의 공중서비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여객으로서 티웨이항공이 운송거절 대상으로 지정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통고한 경우

2. 초과판매 및 티웨이항공의 귀책으로 허용탑재량이 부족할 경우 티웨이항공은 자발적으로 탑승 유예 승객을 유도할 수 있다.

비자발적 탑승 유예를 최소화하기 위한 티웨이항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탑승 유예 승객이 없어 비자발적 탑승 유예 승객이 발생할 경우, 운항에 필요하지 않은 항공사 직원,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승객, 예약이 확약된 승객의 순으로 탑승 유예 대상을 선정한다. 단 이 경우, 유아를 동반한 승객 및 장애인,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는 선정되지 않는다.

비자발적 탑승 유예자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의 운송 불이행 항목에 준하여 보상한다.

티웨이항공은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항공기 허용 탑재량이 부득이하게 감소한 경우 변경된 항공기 허용 탑재량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최소한의 여객 또는 물품을 선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티웨이항공은 운항에 필요하지 않은 항공사 직원,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승객, 예약이 확약된 승객의 순으로 탑승 유예 대상을 선정한다.

3. 상기 사유로 인해 운송이 거절되거나 도중에서 강제 하기되는 여객에 대해서는, 제11조 4항에 의거하여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환불을 행한다.

4. 기내에서 행위

가. 여객이 항공기내에서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신체억류를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해 여객은 운항 중 어느 지점에서 하기 조치되거나 계속 여행이 거절될 수 있으며, 항공기내에서의 행위로 인하여 법률적 책임을 질 수 있다.

1) 항공기, 탑승인원 또는 탑재된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2) 기내에서의 제반행위(흡연, 약물 복용을 포함, 국한되지 아니함)에 대한 승무원의

정당한 지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 3) 타 여객 또는 승무원의 불안, 불편, 손해 또는 부상을 초래하는 경우
  - 4) 상기 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해 여객이 책임을 부담한다.
5.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자기기(휴대전화기, 텔레비전, 컴퓨터, 녹음기, 라디오, CD플레이어, 전자게임기, 전자 조종 장난감, 송수신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 제 8 조 (수하물)

### 1. 위탁 수하물

가. 본 약관의 여하한 조항도 운송인이 수하물 위탁의 편의를 제공할 수 없는 구간에 대하여 여객이 수하물을 위탁할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티웨이항공이 위탁 수하물을 인도받은 경우, 항공권상에 위탁 수하물의 개수 및 중량을 기입한다. (이는 수하물 영수표의 발행을 의미하는 것임). 또한 티웨이항공은 상기와 같이 인도되고 수하물 영수표가 발행된 수하물의 매 개수에 대하여 수하물의 식별 목적을 위해서 수하물표를 발행한다. 모든 위탁 수하물은 통상 취급 방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슈트케이스 또는 그와 유사한 용기에 적절히 포장되어야 한다.

### 2. 수하물의 운송

가. 위탁 수하물은 가능한 한 여객과 동일 항공편으로 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탑재량 관계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티웨이항공은 탑재가 가능한 직전 또는 직후 항공편으로 운송한다.

다. 항공권 또는 탑승권 상에 기재된 자가 아닌 자로부터 대리운송을 부탁 받은 물품에 대하여 티웨이항공은 탑재 및 운송을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수하물 대리운송을 부탁한 자 및 실제 탑승자에게 티웨이항공이 입은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3. 수하물의 내용조사

티웨이항공은 여객의 입회 하에 그의 수하물의 내용물을 확인할 권리를 가지며, 비 동반 수하물의 경우에는 여객의 입회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수하물을 개봉하여 조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그렇게 할 의무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권리를 보유하거나 행사한다고 하여 그렇지 않아도 운송이 거절될 내용물을 티웨이항공이 운송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또는 합의라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 4. 수하물의 인도

가. 위탁 수하물은, 운송 계약에 의거 티웨이항공에 지불할 모든 미불금이 지불되고 당해 수하물과 관련 발행된 수하물 청구표가 티웨이항공에 반환된 즉시, 수하물표 소지자에게 인도한다. 티웨이항공은 수하물표 소지자가 수하물을 인도받을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직접, 간접으로 발생하는 여하한 차손, 분실 또는 비용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아래 “다”호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수하물표에 기재된 목적지에서 인도한다.

나. 수하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자가 상기 “가”호에 정하는 바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가 정당한 권리자임을 충분히 입증하고, 티웨이항공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하물의 인도로써 티웨이항공에 초래될 지도 모르는 손해를 배상한다는 충분한 보증 하에서만 이를 인도한다.

다. 정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제반 상황이 허용하는 한, 위탁 수하물은 수하물표 소지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기 “가”호에 정하는 바와 동일한 조건으로 출발지 또는

- 라. 중 체류지에서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티웨이항공은 당해 수하물의 운송을 위하여 지불한 요금을 환불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마. 수하물표 소지인이 인도 시 서면에 의한 이의의 제기 없이 수하물을 인수함은 당해 수하물이 양호한 상태로 운송 계약에 따라 인도된 것으로 간주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

## 5. 수하물로서 운송이 제한되는 물품

- 가. 여객은 수하물 중에 항공기,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항공운송 도중 파손되기 쉬운 것, 부적절하게 포장된 것 또는 출발지, 경유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령, 규정 및 명령에 의하여 금지된 물품 등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티웨이항공의 판단으로 수하물의 중량, 형태, 크기 또는 성질이 항공기에 의한 운송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티웨이항공은 출발 전 또는 운송 중 당해 수하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 나. 파손되기 쉬운 물건, 부패성 물품, 화폐, 보석류, 은제품, 유가증권, 증권, 기타 귀중품, 견본, 또는 서류는 위탁수하물로서 운송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 다. 위 가.호의 파손되기 쉬운 것, 부적절하게 포장된 것은 다음 각목의 물품을 포함한다.
  - 1) 깨지기 쉬운 물품이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
  - 2) 하드케이스에 넣지 않은 약기류
  - 3) 건강과 관련한 의약품 및 보조식품
  - 4) 노트북 컴퓨터, 핸드폰, 캠코더, MP3 등 고가품 개인 전자제품 또는 데이터

## 6.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

- 가. 미주 내 지정 출발 또는 도착 여행이 아닌 경우
  - 1) 성인 운임 지불 여객에 대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15KG까지 무료운송이 가능하다. 단,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을 제공하지 않는 이벤트 운임은 제외된다.
  - 2) 소아 또는 소아 운임을 지불한 유아의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은 성인 적용 운임을 지불한 여객과 동일하다.
  - 3)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에 대한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10KG이하의 수하물 1개이다. 이와 별도로 휴대용 유모차, 보행기, 카시트, 유아운반용 요람 중 1개가 무료 수하물로 인정된다.
  - 4) 거동이 불편한 승객이 사용하는 1개의 휠체어 또는 기타 보조기구(상기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과는 별도로 무료 운송 될 수 있다.
  - 5) 무료 수하물의 허용량은 보안 및 안전 등의 사유로 크기와 무게 품목이 제한될 수 있다.
- 나. 미주 내 지정 출발 또는 도착 여행인 경우
  - 1) 성인 운임 지불 여객에 대한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각각의 무게가 23KG 이하인 위탁 수하물 2개이다.

2) 소아 또는 소아 운임을 지불한 유아의 무료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성인 적용 운임을 지불한 여객과 동일하다.

3) 좌석을 점유하지 않은 유아에 대한 무료위탁수하물 허용량은 10KG이하의 수하물 1개이다. 이와는 별도로 휴대용 유모차, 보행기, 카시트, 유아운반용 요람 중 1개가 무료 수하물로 인정된다.

4) 거동이 불편한 승객이 사용하는 1개의 휠체어 또는 기타 보조기구(상기의 무료위탁 수하물 허용량과는 별도로 무료운송 될 수 있다).

5) 무료 수하물의 허용량은 보안 및 안전 등의 사유로 크기와 무게, 품목이 제한 될 수 있다.

다. 기타 수하물의 아래 품목은 그의 실제 치수에 관계없이 3면의 합이 203cm 이내여야하며 위탁수하물 무료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는 특수 수하물 요금 징수와 별도로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징수해야 한다.

1) 접을 수 있는 자전거 1대 (모터가 달리지 않은 1인용 여행용 자전거 또는 경주용 자전거, 이때 핸들은 옆으로 고정되고 페달은 분리되어야 함)

2) 스키장비 1 Set (스키화 1켤레, 스키폴 1쌍, 스키 1쌍)

3) 수상스키, 경기용 수상스키 1개

라. 무료수하물 허용량의 합산

동일 항공편으로, 동일 목적지 또는 도중체류지로, 동일 단체로서 여행하는 2인 이상의 여객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티웨이항공에 그들의 수하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요청에 따라, 각 개인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의 합계를 단체 여객 전원에 대한 허용량으로 취급할 수 있다. 상기 합산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수하물에 대하여는 초과 수하물 요금을 부과한다. 수하물의 합산이 허용되는 경우, 티웨이항공은 전체 구성원의 수하물 총 개수 및 총 중량을 단체 대표자의 항공권상에 기재하며, 대표자 항공권 번호의 마지막 부분의 몇 숫자를 단체 구성원의 항공권상에 기재한다.

## 7. 무료 기내 휴대품

가. 1인당 1개로 제한되며 기내선반이나 좌석 밑에 수용되고 무게는 10Kg 이하로 3면의 총합이 115cm 이하로서 여객이 기내에 휴대하여 전적으로 보관하는 경우는 기내휴대품으로 분리하여 적용한다.

나. 티웨이항공은 안전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기내 휴대품에 대해서 객실 내 운송을 위한 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다. 시각장애인 인도견 또는 청각장애인 보조견을 티웨이항공이 운송 인수하는 경우에는, 무료 운송한다.

## 8. 기내 동물

티웨이항공은 생동물(AVIH), 기내휴대동물(PETC)를 서비스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9. 초과 수하물 요금

가. 적용 태리프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전기 “6”항에서 정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수하물에 대해서는 초과 수하물표 발행 당일 티웨이항공이 별도로 정한 초과수하물 요금을 부과한다.

**나. 무료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1킬로그램 미만 0.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은 1킬로그램으로 절상하고, 0.5킬로그램 미만의 중량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 스포츠 수하물 등과 같은 특수수하물에 대해서는 티웨이항공이 규정한 별도의 수하물 요금이 부과된다.

10. 증가요금

항공사는 증가요금을 적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증가요금 신고를 원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운송이 거절될 수 있다.

11. 여객의 경로가 변경되거나 그의 운송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추가운임 지불 또는 운임의 환불에 적용되는

규정이 초과수하물요금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2. 수하물 요금의 지불

티웨이항공은 여객이 적용요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거나, 티웨이항공에 의하여 설정된 신용거래 조건에 따르지 않는 한 수하물을 운송하지 아니한다.

13. 티웨이항공에 의한 수하물의 인수

본 운송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티웨이항공의 노선, 또는 티웨이항공과 1개의 이상의 타 운송인이 관련된 노선상의 운송에 유효한 항공권을 여객이 제시할 경우 티웨이항공은, 티웨이항공이 지정한 시간 내에, 당해 항공권상에 명시된 당해 노선상의 운송을 위하여 여객이 위탁하는 수하물을 인수한다. 다만, 티웨이항공은 아래 경우에는 수하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

- 가. 항공권상에 기재된 목적지 이원 또는 경로 상에 없는 지점으로의 운송을 위하여 위탁하는 수하물
- 나. 도중체류지 이원의 운송을 위하여 위탁하는 수하물
- 다. 티웨이항공과 연대 운송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항공사 또는 수하물운송에 관한 규정이 상이한 항공사에게 이전 탑재할 지정 이원의 운송을 위하여 위탁하는 수하물
- 라. 예약이 되어있지 않는 구간 이원의 운송을 위하여 위탁하는 수하물
- 마. 여객의 도착 공항과 접속 항공편의 출발공항이 상이한 지정 이원의 운송을 위하여 위탁하는 수하물
- 바. 수하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여객이 희망하는 지정 이원의 운송을 위하여 위탁하는 수하물
- 사. 적용요금이 지불되지 아니한 구간 이원의 운송을 위하여 위탁하는 수하물

## 제 9 조 (항공편 스케줄 지연 및 취소)

### 1. 스케줄

시간표 또는 기타 유인물 등에 표시되는 시간은 예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티웨이항공은 티웨이항공이 대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운항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그 결과 운항시간표상의 운항시간은 보장될 수 없으며 항공사와의 운송계약을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스케줄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티웨이항공은 항공편 접속에 대하여도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티웨이항공은 시간표 또는 기타 스케줄 표시상의 오기 또는 누락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치 아니한다.

### 2. 취소

가. 티웨이항공은 예고 없이 운송인 또는 항공기를 변경 대체할 수 있다

나. 티웨이항공은 아래와 같은 경우 예고 없이 항공편, 후속 운송권 또는 예약을 취소, 중지, 변경, 연기 또는 지연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이착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티웨이항공은 본 운송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을 환불하는 이외의 여하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실제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혹은 발생이 보고된 것으로서, 운송인의 통제 능력 하에 있지 않은 사실 (기상조건, 천재지변, 불가항력, 파업, 기타 노사분규, 폭동, 소요, 출입항 금지, 전쟁적대행위, 동란 또는 국제관계의 불안정 등을 포함하되 이에만 한정되지 아니한다.) 또는 그러한 사실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기인하는 지연, 요구, 조건사태 혹은 지시

2) 예측, 예기 또는 예지하지 못한 사실

3) 정부의 규정, 명령, 요구 또는 지시

4) 노동력, 연료 혹은 설비의 부족, 티웨이항공 또는 타사의 인력상의 난점 등의 경우

단, 티웨이항공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 항공사는 관련 약관규정, 태리프 및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을 행한다.

다. 여객이 티웨이항공이 요청한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불을 거절하거나, 또는 여객의 수하물에 대해 요청된 요금의 지불을 거절하는 경우 티웨이항공은 당해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권 또는 후속 운송권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티웨이항공은 본 운송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이 지불한 운임 및 요금의 미사용 부분을 환불하는 이외의 여하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 제 10 조 (환 불)

### 1. 총 칙

미사용 항공권, 그 쿠폰 또는 MCO의 티웨이항공에 의한 환불은 제6항에서 정하는 바 이외에는, 아래 조건에 따라 행한다.

- 가. 환불신청은 당해 항공권 또는 MCO의 유효 기간 내에 행해져야 한다. 항공권 또는 MCO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환불이 신청되는 경우에 티웨이항공은 동 환불을 거절할 수 있다.
- 나. 환불을 신청하는 자는 항공권의 모든 미사용 탑승용 쿠폰 또는 MCO를 티웨이항공에 제출해야 한다.
- 다. 아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은 항공권 또는 MCO에 여객으로서 성명이 기재된 자에게 행한다.
  - 1) 항공권 또는 MCO가 하기에 의거 발행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환불한다.
    - 가) 선불 항공권 통지 (PREPAID TICKET ADVICE : 이하 "PTA"라 한다)에 의한 경우에는 티웨이항공에 운임을 지불한 자에게,
    - 나) 유니버살 에어트래블 플랜 (UNIVERSAL AIR TRAVEL PLAN : 이하 "UATP"라 한다)에 의한 경우에는 에어트래블카드 (AIR TRAVEL CARD)에 명기된 자의 구좌에,
    - 다) 정부 운송 청구서 (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 : 이하 "GTR" 이라 한다)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GTR을 발행한 정부기관에,
    - 라) 크레딧 카드 (CREDIT CARD)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크레딧 카드에 명기된 자의 구좌에,
  - 2) 구입자가 구입 시에 환불 받을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환불은 당해 지정된 자에게 행한다.
  - 3) 환불 신청 시 특정 회사가 그 직원을 대신하여 항공권 또는 MCO를 구입했거나 또는 대리점이 그의 고객에게 환불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제출될 경우에 티웨이항공은 그 직원의 회사 또는 대리점에 대하여 직접 환불한다.
- 라. 환불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상에 기재 또는 지정된 명의인, 회사 또는 대리점임을 표명하는 자에게 본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불은 유효한 환불이며, 티웨이항공은 이후 진정한 권리자에 대하여 또다시 환불해야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마. 출국의사를 증명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또는 티웨이항공에 제출된 항공권에 대하여 티웨이항공은, 당해 여객이 당해 국가 체재 허가를 받았거나, 다른 운송인 또는 기타 교통편에 의하여 출국할 것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환불을 거절할 수 있다.

### 2. 통화

환불은 항공권 또는 MCO가 최초로 구입된 국가 및 환불이 행하여지는 국가의 법령, 규정 또는 명령에 따라 행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환불은 운임지불 시 사용한 통화, 한국 또는 환불이 행해지는 국가의 법화, 또는 항공권 또는 MCO가 구입된 국가의 통화로서 운임이 당초 징수된 통화금액에 상당하는 액으로 한다.

### 3. 환불절차

티웨이항공은 티웨이항공의 각 지점 또는 영업소를 통하여 환불을 행한다.

### 4. 티웨이항공 사정에 의한 환불

가. 본 항에서 말하는 “티웨이항공 사정에 의한 환불”이란 항공편의 취소, 예약된 좌석의 티웨이항공 사정에 의한 제공 불능, 항공편의 연기 또는 지연, 예정된 도중체류지의 생략 또는 제 8 조 1 항에 정한 조건에 의한 운송 거절로 인하여 여객이 그의 항공권에 명시되어 있는 운송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환불을 말한다.

나. 티웨이항공 사정에 의한 환불 시 환불 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1) 항공권을 일부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불한 운임의 전액
- 2) 항공권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의거 산출하되 그 중 높은 금액
  - 가) 운송이 중단된 지점으로부터 항공권에 기재된 목적지나 도중 체류지 또는 운송이 재개될 지점까지의 미사용 구간에 적용되는 편도운임 (왕복 또는 주회여행 항공권의 경우에는 왕복운임의 반액) 및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당초 운임계산에 할인이 적용된 경우에는 적용된 할인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또는
  - 나) 지불한 운임과 운송된 구간의 운임과의 차액

### 5. 여객 사정에 의한 환불

가. 본 항에서 말하는 “여객 사정에 의한 환불”이란 전항 “가”호에서 말한 “티웨이항공 사정에 의한 환불”외의 항공권 또는 MCO 의 환불을 말한다.

나. 여객 사정에 의한 환불 시 환불 액은 아래와 같다.

- 1) 항공권을 일부도 사용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지불운임에서 적용 서비스 수수료 또는 환불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 2) 항공권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불운임 총액과 항공권이 사용된 구간의 적용운임 및 요금의 총액과의 차액에서 적용 서비스 수수료 또는 환불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 다. 항공권의 일부를 환불함으로써 당해 항공권이 운송이 금지된 지점 간에 사용된 결과가 될 경우의 환불 금액은, 당해 항공권이 티웨이항공의 운항권에 위배되지 않는 결과가 되는 지점까지 사용되었던 것처럼 하여 상기 “나”호 2)에 의거 결정한다.

### 6. 분실항공권

티웨이항공은 원칙적으로 전자항공권을 발행하기에 별도 분실항공권이 발생할 수 없다. 또한 별도 재발급하지 않는다. MCO 분실 시 공항지점, 예약서비스, 예약관리팀으로 요청하여 티웨이항공의 별도 지침을 준용한다.



## 제 11 조 (지상운송 서비스)

적용태리프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티웨이항공은 공항 지역 내, 공항과 공항간 또는 공항과 시내간의 지상운송 수단을 보유, 운행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지상운송수단이 티웨이항공에 의해 직접 운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운송은 티웨이항공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이 아니며 그렇게 간주될 수도 없는 독립된 업체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당해 지상운송수단의 수배를 위해 여객을 돕는 과정에서 티웨이항공의 직원,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행하는 여하한 행위도, 당해 독립된 운영업체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티웨이항공으로 하여금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티웨이항공이 여객을 위하여 당해 지상운송수단을 보유하고 운행하는 경우, 여객의 항공권, 수하물표 및 수하물 가격에 대한 협약에 표기 또는 언급된 것을 포함하여 티웨이항공의 운송조건, 규정 등은 당해 지상운송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상기의 경우, 여객이 지상운송 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티웨이항공은 운임의 일부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 제 12 조 (출입국 수속)

### 1. 법령의 준수

여객은 일체의 여행서류, 비자를 취득하는 데 책임을 지며, 여객이 출발, 입국 또는 일시 체류하는 국가의 모든 법령, 규정, 명령, 요구사항 및 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진다. 티웨이항공은 여객이 당해 서류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또는 당해 법령, 규정, 명령, 요구사항, 요건 또는 지시를 준수하지 못해서 여객에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2. 여권 및 사증

가. 여객은 관계국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사항 또는 요건에 의거 요구되는 일체의 출입국서류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티웨이항공은 적용법령, 규정, 명령, 요구사항 또는 요건에 따르지 않거나 서류가 미비된 여객의 운송을 거절한다. 티웨이항공은 여객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입은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여객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 함으로써 티웨이항공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여객은 티웨이항공에 대하여 당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경유지국 또는 목적지국가에서 여객의 입국불허로 인하여 티웨이항공이 정부의 명령에 의거 여객을 그의 출발지 또는 타 지점으로 송환하여야 할 경우, 적용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여객은 송환에 관련된 적용운임을 티웨이항공에 지불하여야 한다. 미탑승 구간의 운송을 위해 여객의 티웨이항공에 지불한 금액 또는 티웨이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여객 소유의 금전을 티웨이항공은 당해 운임의 지불에 사용한다. 입국거절 또는 추방지점에서의 운송을 위해 징수한 운임은 환불되지 않는다.

### 3. 세관검사

여객은 세관과 기타 정부 관리의 요구에 따라 위탁 수하물 또는 휴대 수하물의 검사에 참관하여야 한다. 티웨이항공은 여객이 본 조건을 따르지 아니 한 경우, 여객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여객이 본 조건에 따르지 아니 함으로써 티웨이항공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여객은 당해 손해를 티웨이항공에 배상하여야 한다.

### 4. 정부의 규정

티웨이항공이 적용법령, 정부규정, 요구, 명령 또는 요건에 의거 여객의 운송을 거절하여야 한다고 선의로 타당한 결정을 하여 여객운송을 거절한 경우 티웨이항공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 (여객의 협조의무)

1. 항공기 내에 있는 여객은 항공기와 여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 나.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
  - 다.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 라. 여객은 운항 중 「항공안전법」 제73조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 마.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 바.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2. 여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 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여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항공기 내의 여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기장 등은 여객이 항공기 내에서 제1항 가호부터 바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하게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경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항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 가.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나.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외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 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탑승을 거절할 것을 요청 받거나 통보 받은 사람
  - 다. 그 밖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제 14 조 (운송인의 책임)

### 1. 연결운송인

1개 항공권 또는 그와 연결하여 발행된 항공권에 의하여 둘 이상의 운송인이 접속하여 행하는 운송은 단일 운송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각 구간에서 여객의 여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해당 구간 운송인의 운송약관에 따라 결정되며, 티웨이항공이 항공권을 발행한 운송인인지 연결 항공권상의 첫 구간의 운송인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본 운송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티웨이항공은 타 운송인이 운송하는 구간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 2. 적용법규

가. 본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운송과 관련한 티웨이항공의 책임은 바르샤바협약 또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 또는 몬트리올협약 중 적용되는 협약에서 정하는 책임과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나. 상기 “가”호에 정하는 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티웨이항공이 행하는 모든 운송 및 기타 서비스는 다음에 따른다.

1) 적용법령(협약을 시행하는 국내법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국제운송”이 아닌 운송에 대하여 협약의 규정을 준용하는 국내법 포함), 정부의 규정, 명령 및 지시

2) 티웨이항공의 영업소 및 티웨이항공 정기편이 운항되고 있는 공항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는 본 운송약관 및 적용태리프, 기타 제규정 및 시간표 (단, 동 시간표에 기재되어 있는 출발, 도착시간 그 자체는 포함되지 않음).

다. 운송인의 명칭은 항공권상에 약어로 표기될 수 있으며 운송인의 주소는 항공권상에 운송인의 최초 약어 명칭과 동일한 행에 표시된 출발지 공항이다. “협약”의 목적상, 합의된 도중기착지란, 항공권 및 동 항공권과 연결하여 발행된 연결 항공권에 명시된 출발지와 목적지를 제외한 지정, 또는 여객의 경로상 계획된 도중착륙지로서 운송인의 운항시간표에 표기된 지정이다. 각 운송인의 정식명칭과 약어명칭은 적용태리프에 표기되어 있다.

### 3. 책임의 범위

협약 또는 기타 적용법령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티웨이항공의 책임은 아래와 같다.

가. 운송 또는 그에 부수하여 티웨이항공이 행하는 기타 서비스로부터, 또는 그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망, 상해, 지연, 분실 또는 기타 여하한 성질의 배상청구 (이하 본 운송약관에서는 “손해”라 총칭한다)에 대하여는 티웨이항공은, 그 손해가 티웨이항공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동 손해에 여객의 고의과실이 개재된 경우 티웨이항공의 손해배상책임은 축소된다. 단, 동조 라. 2)호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티웨이항공은 티웨이항공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한, 여하한 경우에도 휴대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휴대수하물의 탑재, 하기 또는 환적 시 티웨이항공 직원의 여객에 대한 도움은 다만 여객에 대한 예우상의 서비스로 간주한다.

다. 티웨이항공이 법령, 정부규정, 명령 또는 요건을 준수함으로써, 티웨이항공이 관리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또는 여객이 이들 법규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티웨이항공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 티웨이항공에 의해 행하여진 운송과 관련하여, 제 3 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티웨이항공의 여객 또는 그 가족에 의해서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티웨이항공은 여객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상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개정바르샤바협약 제22조 (1)항에 따른 책임한도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 2) 티웨이항공은 여객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상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113,100 SDR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바르샤바협약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티웨이항공은 소송상의 청구인지 소송 이외의 청구인지를 불문하고 위 1)호 및 2)호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협약에서 정한 일체의 권리를 가지며, 제 3자에 대하여 분담 및 면책청구권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구상권을 보유한다.
- 4) 상기 1)과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관 또는 기타 유사기관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티웨이항공은 개정바르샤바협약 제20조 및 제22조 (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 미국지역의 미국 사회보장기관 (U.S. SOCIAL AGENCIES) 은 제외한다.
- 5) SDR (SPECIAL DRAWING RIGHTS) 이라 함은 국제통화기금이 정하는 특별인출권을 말한다. SDR로 표시된 금액을 각국 통화로 환산하는 경우, 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의 최종 판결일에 유효한 당해 통화와의 환율을 적용하고, 소송 이외의 경우에는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이 합의된 날에 유효한 당해 통화와의 환율을 적용한다.

마. 위의 라. 1)과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손해를 야기하여 여객의 사망, 부상 기타 신체상해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또는 해당 손해를 야기한 사람에 관하여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티웨이항공은 협약 및 기타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운송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바. 여객의 지연에 대한 티웨이항공의 책임은 여하한 경우에도 협약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사. 수하물 배상 책임한도

- 1) 위탁수하물의 경우, 수하물의 파손, 분실 또는 지연에 대한 티웨이항공의 책임한도는 **킬로그램당 25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 (미화 20.00 불), 휴대수하물 또는 기타 소유물의 경우, 1 인당 5,00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 (미화 400.00 불)을 한도로 한다.**

**다만,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인 경우 책임한도는 위탁 수하물과 휴대 수하물에 대해 1 인당 SDR 1,131 로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티웨이항공은 여객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모든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실 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티웨이항공은 여객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모든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실 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2) 여객에 대하여 위탁수하물 전부가 아닌 일부를 인도하는 경우, 또는 위탁수하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미 인도부분 또는 손해부분에 관한 티웨이항공의 책임은 그 위탁수하물의 부분 또는 내용품의 가격에 불구하고, 그 미 인도부분 또는 손해부분의 중량에 기초하여 비례적으로 산출한다

아. 티웨이항공은 여객 자신의 수하물 내용품에 기인한 본인 또는 타 여객의 부상 또는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여객은 자기 물품에 의하여 타 여객의 부상 또는 수하물 또는 티웨이항공의 재산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당해 여객은

이에 따라 타 여객 및 티웨이항공이 입은 일체의 손실 및 비용을 티웨이항공에 배상하여야 한다

**자. 자. 제 9 조 5.항의 수하물로서 운송이 제한되는 물품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고 여객의 위탁수하물에 포함된 경우 티웨이항공은 그 물품의 파손, 분실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차. 티웨이항공은 이 약관의 규정상 수하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위탁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티웨이항공에 인도되어 티웨이항공이 접수한 물품은 수하물 가격 및 책임한도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티웨이항공의 공시요율과 요금의 적용을 받는다.

**카. 티웨이항공이 타 운송인의 노선상의 운송을 위하여 항공권을 발행 또는 수하물을 위탁 받는 경우, 티웨이항공은 당해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만 행위하는 것이다. 티웨이항공은 티웨이항공 운항 노선 이외에서 발생한 여객의 사망, 상해, 지연 및 휴대수하물 또는 위탁수하물의 파손, 분실 또는 지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티웨이항공 노선 이외에서 발생하는 위탁수하물의 파손, 분실 또는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티웨이항공이 운송 계약상 최초 운송인 또는 최종 운송인인 경우에 당해 위탁수하물의 파손, 분실 또는 지연에 대하여 본 약관에 정해진 조항에 따라 여객은 티웨이항공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타. 본 운송약관 및 적용 태리프에 의거하여 행하는 운송으로부터 발생하는 간접손해 또는 특별손해 및 징벌적 배상에 대하여 티웨이항공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파. 본 약관 및 적용태리프에 설정된 티웨이항공의 면책 또는 책임한도에 관한 제반규정은 티웨이항공의 대리인, 종업원 및 대표자, 그리고 운송을 위해 티웨이항공이 사용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그의 대리인, 종업원 및 대표자 전원에게도 적용된다.

#### 4. 제소원인

여객 및 수하물 운송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것이건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것이건 그 청구의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협약에 정한 조건과 제한하에서만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협약은,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누구이며, 청구권자가 가지는 권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 15 조 (손해배상 청구기한 및 제소기한)

### 1. 손해배상 청구기한

수하물에 파손이 있었을 경우에는, 인도받을 권리자가 파손을 발견한 후 즉시, 또는 늦어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티웨이항공 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또한 지연 또는 분실의 경우에는, 당해 수취인이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게 된 날 (지연의 경우) 또는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게 되었어야 할 날 (분실의 경우)로부터 21일 이내에 티웨이항공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여하한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모든 이의는 상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운송이 협약”에서 정의한 “국제 운송”이 아닌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자가 아래 사항을 증명할 때에는 당해 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 가. 당해 통지가 정당한 합리적인 이유로 불가능했다.
- 나. 티웨이항공의 사기에 의하여 당해 통지가 불가능했다.
- 다. 티웨이항공이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손해를 알고 있었다.

### 2. 제소기한

티웨이항공에 대한 책임에 관련한 제소는 목적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항공기가 도착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그 기한 이후에는 티웨이항공에 대한 여객의 제소권은 소멸된다.

## 제 16 조 (법령 우선)

항공권, 본 운송약관 또는 기타 적용 태리프에 정하는 규정이 법령, 정부의 규정, 명령 또는 요건에 위반되는 경우에 본 규정은 그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어느 규정이 무효로 되어도 타 조항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 제 17 조 (수정 및 포기)

티웨이항공의 대리인, 피고용인 또는 대표자는 운송계약, 본 약관 또는 기타 적용 태리프의 여하한 규정도 변경 또는 수정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 제 18조 (약관의 정본)

본 약관은 영문판으로 번역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석상 의문이 제기되거나 분쟁이 야기될 시는 국문판 약관의 해석에 따른다.